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 애 인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신청 간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급여 감액기준과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신청 간주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을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함(안 제2조, 안 제5조의2 및 안 별표 1).

나. 기초급여 차등 지급에 따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기준을 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차등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따른 감액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권자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경우: 선

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만원 단

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2. 수급권자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

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

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

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

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2.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3만원을 넘는 경우: 선

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단

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초급여액을 달리 지급하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 법 제6조제3항에서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받으면”을 “받은 경우(법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날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제8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으로”를 “사람(법 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2조”를 “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청인에”를 “신청인(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제출받은 자료
 3.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 제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재산 신고서
2.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65세 미만인 사람	67,500원
2) 65세 이상인 사람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만원
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만원
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65세 미만인 사람	22,500원
2) 65세 이상인 사람	37,5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분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 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 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삭 제>
제3조(소득의 범위) 별 제2조제6 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 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3조(소득의 범위) 「장애인연금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 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 액)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득 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 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5항----- -----

현행	개정안
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 ----- ----- ---. 1. 수급권자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2. 수급권자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

현행	개정안
	<u>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u> <u>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u>법 제6조제3항</u>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u>	③ ----- ----- ----- ----- <u>법 제6조제4항</u>----- ----- ----- ----- ----- -----. <u>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u>

현행	개정안
<u>경우: 4만원</u> 2. <u>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u> <u>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u>	<u>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u> 가. <u>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u> 나. <u>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u> 2. <u>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u> 가. <u>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u> 나. <u>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3만원을 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하되, 3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u> <u>3.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u> <u>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u> <u>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u> <u>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u> <u>제5조의2(기초급여액을 달리 지급하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 법 제6조제3항에서 “장애 정도가</u>

현행	개정안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u>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u>받으면</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받은 경우(법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현행	개정안
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날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법 제9조제1항에 따
<신 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u>법 제8조제3항제1호</u>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u>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u>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u>법 제8조제3항제1호</u>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u>법 제8조제4항제1호</u> ----- ----- ----- ----- -----.
1. <u>법 제8조제3항제1호</u> 에 따른 금융정보 가. ~ 바. (생략)	1. <u>법 제8조제4항제1호</u> ----- ----- 가. ~ 바. (현행과 같음)
2. <u>법 제8조제3항제2호</u> 에 따른 신용정보 가.·나. (생략)	2. <u>법 제8조제4항제2호</u> ----- ----- 가.·나. (현행과 같음)
3. <u>법 제8조제3항제3호</u> 에 따른 보험정보 가.·나. (생략)	3. <u>법 제8조제4항제3호</u> ----- ----- 가.·나.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방법 등) ① <u>법 제9조제2항</u> 에	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방법 등) ① -----

현행	개정안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u>사람으로</u>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u>제2조에</u>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u>제2조에</u>	----- ----- ----- 신청한 사람(법 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u>법 제2조제1호에</u>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u>법 제2</u>

현행	개정안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 <u>신청인에</u>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 <u>신청인(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u>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실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u> <u>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u> <u>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재산 신고서</u> <u>2.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 재심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

현행	개정안
	<u>제2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제4조(부가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분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부가급여액(제6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9만원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
2.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8만원 8만원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8만원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3만원 5만원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안)

부가급여액(제6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9만원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
2.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8만원 8만원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8만원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3만원 5만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65세 미만인 사람	67,500원

<u>2) 65세 이상인 사람</u>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 당 연도의 기초급 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의 100 분의 75에 해당하 는 금액
<u>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u>	<u>6만원</u>
<u>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u>	<u>6만원</u>
<u>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u>	
<u>1) 65세 미만인 사람</u>	<u>22,500원</u>
<u>2) 65세 이상인 사람</u>	<u>37,500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3321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신청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개선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통지 관련 인용 조문을 제10조제2항에서 제10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 인 년 월 일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하신 경우에는 하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란에 √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력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나. 신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가구 특성과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및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다.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성 확인은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 등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라.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소득정보·재산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 확인 및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득정보·재산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에 기재된 정보를 위 조사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3항----- ----- ----- ----.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